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13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5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한파·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 및 「건축법」

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안 제22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주거시설이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건축법」 및 「농지법」이 정하는 기준까지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2조의3 신설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u>기숙사</u> 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u>기숙사</u>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u>근로기준법</u> 」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u>주거시설</u> 의 제공 등) ① ----- <u>주거시설</u> 을 ----- ----- 「 <u>근로기준법</u> 」 ----- <u>제100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에서</u>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u>기</u>	② ----- <u>주거시</u>

현행	개정안
<u>숙사</u>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u>기숙사</u>의 구조와 설비 2. <u>기숙사</u>의 설치 장소 3. <u>기숙사</u>의 주거 환경 4. <u>기숙사</u>의 면적 5. 그 밖에 <u>기숙사</u>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u>기숙사</u>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설</u>을 ----- ----- ----- ----- ----- -----. 1. <u>주거시설</u>----- 2. <u>주거시설</u>----- 3. <u>주거시설</u>----- 4. <u>주거시설</u>----- 5. ----- <u>주거시설</u> ----- ----- ③ ----- <u>주거시설</u> ----- ----- -----. <u>제22조의3(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생략) 1. (생략)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u>기숙사</u> 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u>주거시설</u> ----- ----- ----- ----- ----- ----- -----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고,¹⁾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1)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어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어 것
4.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추어 것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²⁾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며,³⁾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⁴⁾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가설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기숙사를 제공하여⁵⁾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⁶⁾,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지역은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 2)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 3)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4)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5)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mbc뉴스데스크(2025. 2. 7)
- 6) 해당 수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 외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까지 포함된 것임

라 외국인근로자의 수요는 많으나 이들에게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사용자가 많고, 이들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해당 지역의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다른 주거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최근 4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설 기준 미달 사업장 수	95	118	130	220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기숙사뿐⁷⁾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계획 수립하지도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⁸⁾ 확정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주거권을 보호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한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세부사업에⁹⁾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내역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류관리 전반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 해당 내역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 지원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 사용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기숙사(주거시설)의 제공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시설 단속 강화가 주거시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으로도 비닐하우스 숙식시설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

8) 서울고등법원 2024나56742

9) 사업코드 3051-308

용허가제의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와 불법 건축물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률 이행과 사용자의 법률 준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법제적 측면에서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 「농지법」 제34조는 농지 전용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준 준수를 규정한 개정안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706호) 검토보고서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 제22조의3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세부사업 중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이라는 내역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류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비용 1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22조의3(<u>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u>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u>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u>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3(<u>자치단체에</u>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u>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을</u>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¹⁰⁾ 계절근로자의 상시고용 및 숙소용 주택의 추가 건립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적합한 숙소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면서 계절근로자가 3개월에서 8개월까지만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절근로는 가설건축물축조심사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고용허가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¹¹⁾ 때문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혼란 초래를 최소화하고 농

1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컨테이너·창고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는 등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전용, 기숙사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